

物品의 模樣으로서의 文字概念

〈日本最高裁 1980年10月16日 判決, 1980年(行ツ)第75號

原審 東京高法 1980年3月25日判決, 1978年(行ケ)第30號〉

1. 上告人: X(被告; 日清食品株)

2. 被上告人: Y

3. 判決

上告를 棄却한다.

4. 事件概要

X는 自己所有의 包裝用器에 대한 意匠權者이며 그 意匠의 要旨는 全體形狀을 거의 定圖錐臺形狀(높이 7, 上緣의 直徑 6, 下緣의 直徑 4의 比率)으로 하여 上面 全體를 開口部로 한 容器의 全體의 바탕빛을 밝게하고 周側部는 덜 밝게 또는 어둡게 模樣을 表示하였다.

그리고 그 上下의 橫縞狀의 띠에 둘러싸인 正背面周側中央部에 CUP 또는 NOOLE의 로마字를 中間 밝기의 線으로 에워싸게 한 比較的 圖案化하는 字體로서 左右에 겹치게끔 構成한 圖形을 表示한 樣態의 意匠이다.

이에 대해 Y는 이 意匠의 要部인 로마字는 意匠의 構成인 意匠法 2條1項을 넘어선 同法 3條 1項 但書의 構成要件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X의 登錄意匠에 無效審判을 請求하였다.

特許廳은 無效審判請求에 대하여 本件 登錄意匠의 容器形狀과 類似한 形狀의 容器가 出願前부터 公知인 지라도 本件 登錄意匠은 그 周側部에 前記한 바와 같이 橫縞狀의 띠 또는 文字 등의 圖形이 表示되어 있으며 더우기 文字도 그 構成樣態에

創作이 있고 模樣으로 認定되는 範圍의 것이므로 單純히 形狀의 類似한 容器와 類似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無效가 아니라고 審決하였다.

이에 대하여 Y는 本件 取消訴訟 東京高法에 提訴한 바 同高法은 審決은 CUP NOODLE의 部分을 模樣으로 보되 本件 意匠은 法3條 1項 但書에서 말하는 意匠, 나아가서 同法 2條項에서 말하는 意匠에 해당한다고 判斷하여 이를 前提로 議論을 推進하였다.

그러나 本件 意匠은 로마字를 읽게 하기 위한 普通의 配列方法으로 配列하고 있으며 겹이 들어있는 누들을 表現하는 商品名을 마치 商標인양 表示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같이 보이므로 아직도 로마字가 模樣으로 變化하여 文字 本來의 機能을 喪失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模樣으로 볼 수 있다고 한 審決은 잘못이라고 判決하였다.

따라서 X는 原判決에 대하여 意匠法은 意匠의 創作을 勸獎하는 法律이므로 가령 文字라 할지라도 이에 創作이 있으면 法의 保護에서 除外될 理由가 없다는 등의 理由를 들어 上告하기에 이르렀다.

5. 判決要旨

所論의 점에 관한 原審의 認定判斷은 原判決舉示의 證據 및 그 說示에 비추어 正當하다고 是認할 수

가 있으므로 그 過程에 所論의 違法은 없다.

論旨는 原審의 專權에 속하는 證據의 取捨判斷事實의 認定을 非難하거나 또는 原判決을 正解하지 않고 그 不當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採用할 수가 없다고 判決하여 本件 上告를 棄却하였다.

6. 解說

本件 判決은 從來에는 先例가 없는 判決이며 今後의 意匠登錄出願 實務나 意匠法의 解釋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本件 判決이 果然 妥當한 法規로서 解釋할 수 있느냐의 與否에는 疑問이며 이 判決에 反對하는 輿論이 적지 않다.

특히 原審인 東京 高法判決도 意匠法에서 말하는 意匠의 構成要件 및 登錄要件에 대해서 意匠의 本質을 잘못 본 것이며 到底로 判決에 贊同할 수 없다는 反對論者까지 있는 形便이다.

